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56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18. 6.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위임한
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정의 정비(삭제·신설) 및 용어 수정(안 제2조, 안 제10조)
- 나. 자전거 보험에 관한 일반사항 추가(안 제5조의2)
- 다. 자전거주차장 설치, 관리·운영사항 등 구체화(안 제6조~안 제8조)
- 라.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 규정 신설(안 제8조
의2 ~ 안제8조의3)
- 마.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내용 구체화(안 제8조의4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(2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 / 의견 있음 / 개선 권고 사항 수용

(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 / 의견 있음 / 개선 권고 사항 수용

(4) 규제심사 : 원안 동의 / 해당사항 없음

(5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 : 2018. 3. . ~ 2018. 4. .

(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(6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자전거를 거치 보관하는 시설을”을 “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,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” 로 한다.

제2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“자전거 수리센터”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.
9. “민간단체”란 자전거 이용환경의 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 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여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.

제5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.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제2항을 삭제한다.

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 공원, 하천, 공공기관, 시내버스정류장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그 자전거주차장을 관리 운영한다.

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관리를 해당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8조 중 “제6조에 따라 설치된” 을 “제6조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”으로 한다.

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) ① 군수는 법 제11조의4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의 규모, 용도, 전기자전거의 보급현황 및 도로여건,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.

제8조의3(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공원, 하천, 공공기관, 시내버스정류장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수리센터에서 자전거의 펑크, 림 교정 및 브레이크 조정 등 경미한 수리를 할 경우 그 비용은 무료로 하되, 그 수리시 부품 교체를 할 경우 이용자는 그 부품의 원가를 부담 한다.

제8조의4(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) 군수는 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무단방치 자전거를 분해 수리 및 부품교체 등을 통하여 재활용하거나 폐기처분할 수 있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정비소” 를 “자전거 수리센터” 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자전거보관소 대여소” 를 “자전거보관소 대여소, 자전거

수리센터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자전거”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,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.	<u><삭 제></u>
2. “자전거이용시설”이란 자전거도로, 자전거주차장, 기타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시설로서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	<u><삭 제></u>
3. “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”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유지 관리를 말한다.	<u><삭 제></u>
4. “자전거 주차장”이란 자전거를 거치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.	4. -----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,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-----.
5. ~ 7. (생략)	5. ~ 7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8. “자전거 수리센터”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.
<u><신 설></u>	9. “민간단체”란 자전거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 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여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5조의2(자전거 이용자 보험) ① ~ ② (생략) <u><신설></u> 제6조(자전거주차장 설치) ① 군수는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. ② 군수는 공원, 하천, 공공기관 등 자 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. 제7조(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및 운영) ① 자전거주차장 관리는 해당 자전거주 차장을 설치한 자가 한다. ② (생략) ③ 군수는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. 제8조(자전거의 주차요금) 제6조에 따 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. <u><신설></u>	제5조의2(자전거 이용자 보험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 에 따른다. 제6조(자전거주차장 설치)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 치하는 경우 이외에 공원, 하천, 공공 기관, 시내버스정류장 등 자전거 이용 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. <u><삭제></u> 제7조(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및 운영) ①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그 자 전거주차장을 관리 운영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 ③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관리를 해당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제8조(자전거의 주차요금) 제6조 제1 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----- -----. 제8조2(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) ① 군수는 법 제11조의4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, 용도, 전기자전거의 보급현황 및 도로여건, 이용현황 등 을 고려하여 전기자전거 충전소를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설치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. <u>제8조3(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)</u>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공원, 하천, 공공기관, 시내버스정류장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수리센터에서 자전거의 펌크, 림 교정 및 브레이크 조정 등 경미한 수리를 할 경우 그 비용은 무료로 하되, 그 수리시 부품 교체를 할 경우 이용자는 그 부품의 원가를 부담한다.
<u><신 설></u>	<u>제8조4(무단방치 자전거 처분)</u> 군수는 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무단방치 자전거를 분해 수리 및 부품교체 등을 통하여 재활용하거나 폐기처분할 수 있다.
<u>제10조(시범기관의 지정 운영)</u>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보관소 정비소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	<u>제10조(시범기관의 지정 운영)</u> ② -----자전거 수리센터-----.
<u>제15조(위탁운영)</u> ① 군수는 자전거주차장, 군민자전거, 자전거보관소 대여소 등의 관리 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	<u>제15조(위탁운영)</u> ① -----자전거보관소 대여소, 자전거 수리센터-----.

□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.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·군·자치구(이하 "시·군·구"라 한다)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시·군·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4.1.28.]

제11조(자전거 주차장의 설치·운영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주차장법」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「주차장법」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「주차장법」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「주택법」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.19.>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4.1.28.]

제11조의4(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7.3.21.]

제13조의2(자전거 수리센터 운영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4.1.28.]

제20조(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) ① 누구든지 도로, 자전거 주차장,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.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·보관·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4.1.28.]

□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9조(자전거 주차장의 운영)법 제11조 제4항에 따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·관리에 관한 사항
2. 자전거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
3.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

[전문개정 2014.4.28.]

제11조(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, 그 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,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한다.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.

1.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·모양·수량 및 제조회사명

2.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·보관한 일시
3.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
4.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된다는 뜻

가.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,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

나. 기증,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하거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1.19., 2017.7.26.>

1. 매각. 이 경우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의 예에 따르되,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(隨意契約)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,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한다.

2. 기증

3.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

4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, 자전거의 특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지나도록 자전거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관 중인 매각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.

⑤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된 자전거가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4.4.28.]

